

		<h1>보 도 자 료</h1>		
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 주거복지로드맵		배포일시	2020. 8. 10.(월) 총 2 매(본문2)	
담당 부서		공공주택지원과	·과장 최아름, 사무관 서형우 ·☎ (044) 201-4533	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1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1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도심 내 유휴 오피스·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.

-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- ◆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·준주택 뿐만 아니라 유휴 오피스·상가 등도 매입·리모델링하여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
- ◆ 민간사업자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기준 완화
- ⇒ 포스트코로나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트렌드,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도심에 1~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일부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「5.6.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」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(경기 김포시을)이 대표 발의하여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□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*의 범위를 주택·준주택**에서 오피스·상가 등으로 확대한다.

* 「주택법」 제49조의 사용검사 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

**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 등

-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·보수하여 공급해왔으나,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·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~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.

- 이를 통해 **코로나 19**로 촉발된 **비대면 산업 활성화** 등에 따른 도심 내 **유희 오피스***·**상가**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최근 **1인 주거 수요증가****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오피스공실률('20.2Q) : 서울(9.1%), 부산(16.9%), 광주(18.2%), 충북(26.3%), 강원(19.5%)

** 1~2인 가구 전망 : ('18) 57.4%→ ('27) 63.7%→ ('37) 69.1%→ ('47) 72.2%(통계청, '19)

- ②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**매입약정***을 체결하여 **1~2인용 공공임대주택**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**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**을 통한 1~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**주차장 기준(세대당 0.3대)**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* 민간사업자가 건축·준공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계약

-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**약정주택이 준공** 되면 **1개월**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**매도요청**을 하고,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**2개월** 이내에 주택을 **매도**해야 한다.

-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이번 개정안은 **2020년 10월 18일부터** 시행될 예정이며, **하위법령**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**구체화***하고, 매입약정 시 **주차장 완화 기준**을 적용하기 위한 **세부 절차도** 마련할 예정이다.

*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

- 또한, 오피스 등을 포함한 **공공리모델링 사업**을 통해 '22년까지 **서울** 등에 공공임대주택 **8천호**를 공급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“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 “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서형우 사무관(☎ 044-201-453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